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

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 김철민·김민기·안민석

이원욱 • 윤관석 • 박 정

서영교 · 남인순 · 임종성

도종환 · 황 희 · 이정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,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 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.

그런데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200 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 게 유지되고 있음.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 하된 것으로, 실제로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 음.

이에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,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4천800만원"을 "9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	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
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	
급에 대한 대가(부가가치세가	
포함된 대가를 말하며, 이하	
"공급대가"라 한다)의 합계액이	
<u>4천800만원</u> 이상 같은 금액의	<u>9천만원</u>
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	
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	
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	
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	
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	
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	
받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	
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